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강*순][630305-2]

주 소 : [50***] [경남 김해시 활천로***번길 *-** (어방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 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0033	4,996,970	704,301		5,701,271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강*희][700701-2]

주 소 : [52***] [경남 진주시 대신로***번길 *-*, ***동 ***호 (초전동, 청구타운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0190	2,975,915	254,553		3,230,468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권*석][760607-1]

주 소 : [13***] [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**, ***호 (창곡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0550	8,236,920	1,099,368	10,680	9,346,968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김*경][740219-1]

주 소 : [15***] [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* (이동) *층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0880	779,103	104,877		883,980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
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
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
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
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
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김*일][820223-2]

주 소 : [14***] [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***번길 ***-*(고강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1944	1,819,464	248,739		2,068,203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
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
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
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
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
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김*경][730415-2]

주 소 : [32***] [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**, *동 ***호 (오관리,우주은하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2443	5,239,876	65,893		5,305,76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1.채무조정요청권: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3.법원의 개인회생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김*영][670904-2]

주 소 : [12***] [경기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***-**, ***동 ***호 (산이리,코아루햇빛마을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2647	3,219,252	312,306		3,531,558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류*정][671102-1]

주 소 : [18***] [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*길 *-**, ***동 ****호 (반송동,동탄시범다은마을풍성신미주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2907	1,172,233	213,505		1,385,738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
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
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
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
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
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박*현][740204-1]

주 소 : [39***] [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**길 **, ***동 ***호 (원호리,구미원호대우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3448	388,630	65,232		453,862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배*선][810630-2]

주 소 : [30***] [세종 조치원을 이화로 *, ***동 ***호 (신흥리, 신흥주공*단지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3892	712,717	120,749		833,466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
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
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
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
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
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송*영][651021-1]

주 소 : [34***] [대전 대덕구 홍도로***번길 **, ***호 (중리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4416	868,332	110,069		978,401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1.채무조정요청권: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3.법원의 개인회생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송*철][631031-1]

주 소 : [08***] [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***길 **, ****호 (독산동,푸*터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4427	1,670,322	174,837		1,845,15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송*나][920503-2]

주 소 : [05***] [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***, ***동 ***호 (가락동, 헬리오시티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4435	5,001,341	367,966		5,369,307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신*숙][870609-2]

주 소 : [14***] [경기 시흥시 장현장곡로 **, ****동 ***호 (장곡동,유승한네들퍼스트파크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4601	4,115,775	87,313		4,203,088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양*진][860106-1]

주 소 : [14***] [경기 부천시 안곡로 ***-*, ***호 (괴안동,성도***빌라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4942	192,248	21,058		213,306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여*구][711123-1]

주 소 : [15***] [경기 시흥시 서울대화로***번길 **, *동 ***호 (배곧동,배곧해리움어반크로스*차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4997	926,210	83,821		1,010,031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오*정][800614-1]

주 소 : [12***] [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***번길 **, ***동 ****호 (오남리,신우아이딜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5074	9,999,530	327,513		10,327,043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유*][770201-1]

주 소 : [61***] [광주 북구 첨단연신로***번길 *-* ***호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5324	988,024	20,205		1,008,22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유*원][880720-2]

주 소 : [13***] [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***, ***동 ***호 (야탑동,매화마을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5414	215,138	17,879		233,017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
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
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
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
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
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윤*상][740803-1]

주 소 : [58***] [전남 나주시 석전*길 ***-**, ***호 (빛가람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5565	1,200,000	173,909		1,373,90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희][880225-2]

주 소 : [24***] [강원 춘천시 삭주로 ***, ***동 ***호 (후평동,현대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5794	16,726,927	254,627		16,981,554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학][610613-1]

주 소 : [05***] [서울 광진구 자양로**길 *** (구의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043	239,427	31,171		270,598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규][740410-1]

주 소 : [33***] [충청남도 보령시 뒷박산*길 * (신흥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175	2,494,933	326,921		2,821,854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][890416-2]

주 소 : [08***] [서울 관악구 관악로 ***, *층 (봉천동, 학선빌딩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224	18,398,567	61,036		18,459,603
20091-06225	6,562,925	138,974		6,701,89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
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
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
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
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
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나][690302-2]

주 소 : [14***] [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***, *층 해*촌 (호계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461	1,251,862	75,535		1,327,397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순][631206-2]

주 소 : [21***] [인천 부평구 부흥로***번길 **, ***호 (부평동, 수연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584	592,809	108,571		701,380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석][620917-1]

주 소 : [18***] [경기 화성시 영통로**번길 **, ***동 ***호 (반월동,신영통현대타운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741	5,198,500	302,269		5,500,76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연][800408-2]

주 소 : [26***] [강원 원주시 홍양로**번길 **, ***동 ***호 (태장동,이안원주어반파크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779	1,096,733	60,498		1,157,231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엽][911210-1]

주 소 : [16***] [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***, ***호 (금곡동,로얄팰리스*차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806	998,804	46,103		1,044,907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이*형][850305-1]

주 소 : [13991] [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***번길 **, ***호 (안양동,리*빌*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6965	26,647,086	326,959		26,974,045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
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
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
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
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
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조*비][920917-2]

주 소 : [06***] [서울 강남구 언주로**길 **, ***호 (역삼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8371	5,207,442	144,517		5,351,95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진*훈][880401-1]

주 소 : [18***] [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**길 **, ***호 (목동,E편한세상동탄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8572	1,000,000	69,238		1,069,238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최*욱][840621-1]

주 소 : [10***] [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*로 ***, ***동 ****호 (식사동, 일산자이더헤리티지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 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8880	993,154	151,443		1,144,597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최*진][770410-2]

주 소 : [07***] [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*길 ***, ***동 ***호 (목동,이편한세상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8892	2,620,221	405,634		3,025,855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최*권][810212-1]

주 소 : [14***] [경기 광명시 오리로 *** **동 ****호 (하안동,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8993	5,996,491	943,082		6,939,573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한*은][830520-1]

주 소 : [51***] [경남 김해시 무계한빛길 **, ***동 ****호 (무계동,김해장유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1-09270	22,109,720	3,548,903		25,658,623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고*석][831024-1]

주 소 : [03***] [서울 마포구 월드컵로**나길 *, ***호 (성산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
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
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
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
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2-00061	3,099,913			3,099,913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
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1.채무조정요청권: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 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3.법원의 개인회생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 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 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 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	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 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---------------	---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김*선][740528-2]

주 소 : [07***] [서울 강서구 곰달래로**길 **, *동 ***호 (화곡동,드****운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2-00398	3,505,485			3,505,485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

채권 재양도(환매) 예정 통지서

수신인(채무자) : [최*희][631024-2]

주 소 : [48***] [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**번길 *, 진****집 (남천동)]

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, 채권양도 및 개인(신용)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합니다.
하나카드 주식회사 와(과)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간 2026년 02월 26일자로 체결된 자산 양수도 계약에 의거,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로 양도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,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환매사유가 발생되어 본 통지서(채권 재양도의 예정통지)를 발송하오니,
위 채권양도에 따라 아래의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(연대보증인/물상보증인 포함)에 대한 권리 근거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2026년 09월 10일자로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개인(신용)정보 제공 사실 통지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양도인은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 채권양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양수인에게 제공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 채권과 관련 된 정보 일체

*양도대상채권

(기준일 : 2026.07.30)

채권번호	채무원금	이자금액	가지급금	총금액
20092-01817	1,502,199			1,502,199

* 가) 연체이자, 연체금리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

나) 소멸시효 완성여부 : 부

※ 소멸시효는 [민법]제162조 및 [상법]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- 1.채무조정요청권:**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예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2.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:**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3.법원의 개인회생:**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4.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:**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2026년 08월 19일

채권 재양도인 및 발신인

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
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(거제동)
대표이사 : 박 유 성 (직인생략)